



청약철회권 도입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강민규 변호사

요약

-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5차례에 걸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위원회의 개정안을 2013.12.19.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였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 효력정보 이용 근거 규정 신설 등임.

■ 국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12.12.31.부터 2013.2.12.까지 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마련하였고, 국회 정무위원장은 2013.12.19. 국회 본회의에 동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¹⁾

●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기선의원²⁾, 안민석의원³⁾, 이종걸의원⁴⁾, 박대동의원⁵⁾, 강기정의원이⁶⁾ 각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의안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8642.
 2) 의안번호 1903174, 제안일자 2012.12.3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자 등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안번호 1903406, 제안일자 2013.1.24,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 보험사기 보험금액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임.
 4) 의안번호 1903528, 제안일자 2013.1.3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 및 효과, 입증책임 등 청약 철회 제도를 규정하는 것임.
 5) 의안번호 1903665, 제안일자 2013.2.7,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6) 의안번호 1903681, 제안일자 2013.2.12,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보험계약 표준약관상 “보험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로 명시되어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정하는 것임.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13.6.24.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2013.6.26. 위원회 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고,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정무위원장이 2013.12.19.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제안하여 같은 날 국회 본회의(회의명 제321회 제1차)에서 개정안이 통과(원안가결)되었음.

■ 개정안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규제 대상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직접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개정안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 내용(보험사기행위 정의 규정 신설, 보험금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벌칙규정 신설 등)은 제외하였음.

■ 개정안은 보험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청약 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철회권 행사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간을 철회권 행사기간으로 함.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청약을 철회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왔음.

- 개정안은 위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청약 철회 가능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15일보다 긴 기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위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위 청약 철회를 이유로 청약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위 청약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약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철회 효력이 발생함.
- 위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 시행이후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됨.
- 보험계약 체결 내지 모집 종사자들이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행 보험업법(제176조 제10항, 제12항)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하여 경찰청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 등 보험 관계자지들은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업무절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은 보험증권을 교부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에 지우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증권 교부받은 날이 청약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에 관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청약자의 보험증권 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관한 내용만이 반영되어 있고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 전반에 관한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입법상 과제로 남아 있음. [kiri](#).